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58 호 2015. 6.15(월)

공 고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1
-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 2015-774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제처 등의 사례 시달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 조건을 일부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안 제17조제2호)

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4일까지 불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9),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담당자 청소계 담당자 김경수(전화 : 620-62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6.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등의 사례 시달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 조건을 일부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안 제17조제2호)
- 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15. ~ 2015. 7. 4. (20일간)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u>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u> <u>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u> <u>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u></p> <p>3. ~ 5. (생 략)</p> <p>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 략)</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삭 제</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삭 제</u></p> <p>③·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5-785호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세부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 및 집행의 애로사항 해소.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설치 목적,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제1~3조)
- 나. 경로당 지원, 보조금 반환 (제4~5조)
- 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수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제6~8조)
- 라. 경로당 운영의 공개 등(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3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44),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노인복지담당자 박현진(전화 : 620-61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6.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여성가족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세부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 및 집행의 애로사항 해소.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설치 목적,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제1~3조)
- 나. 경로당 지원, 보조금 반환 (제4~5조)
- 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수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제6~8조)
- 라. 경로당 운영의 공개 등(제9조)

3. 참고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6. 15. ~ 2015. 7. 3. (19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별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노인 등을 위한 공동주거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고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설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3.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신축·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사업비 및 물품·장
비 보강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6.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기구와 체력 관련 기구 구입비

7.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운영비

8. 모범경로당과 경로당 운영 유공어르신 표창

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공개 등)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면·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면·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